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255,640,482 | 37,669,214 |
| 일반회계 | 1,084,969,362 | 32,549,081 |
| 특별회계 | 170,671,120 | 5,120,134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49,258,642 | 4,477,759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4,940,514 | 1,048,215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47,812,333 | 1,434,370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66,505,795 | 1,995,174 |
| 기타특별회계 | 21,412,478 | 642,374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833,200 | 24,996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6,962,839 | 208,885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4,076,487 | 122,295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6,581,733 | 197,452 |
|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2,367,319 | 71,02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590,900 | 17,727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,238,805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5,7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